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흥순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2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량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시기 이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예견된 상황에 있어 서울시 자체 처리시설에서 전량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통한 감량노력이 절박한 상황에서,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해 징수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톤당 반입수수료는 반입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입량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양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감면 또는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